

〈논문〉

##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

禹志淑\*\* · 李準雄\*\*\* · 李哉協\*\*\*\*

### 요 약

이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6월 사이 전국에서 열린 20건의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으로 참여한 배심원단 29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공판 참여 경험과 평의 참여 경험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배심원들은 판사가 재판 진행을 잘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평의 중 판사로부터 의견청취를 통해 평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할수록 재판이 공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다고 인식했다고 하여 재판이 덜 공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검사가 사건 진행에 유능하였거나 변호사가 피고인 변호를 잘했다고 하여 재판이 더 공정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충분히 진술했다고 생각했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인식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평의의 과정 중 얼마나 개방적으로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사회자가 원만한 진행을 위한 역할을 하였는지, 본인이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였는지, 평의의 과정에 만족하였는지, 판결의 방향에 동의했는지 등의 변수들이 재판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지도를 대상으로 보면, 재판 관련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토론을 즐기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등 인지적 욕구가 강한 그림자 배심원들일수록, 그리고 본인이 평의 중 토론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할수록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판사의 역할이나 공판의 과정이라기보다 배심원 본인의 인지적 능력과 참여 의지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공정성, 배심제, 그림자 배심, 국민참여재판

\* 본 논문의 토대가 된 그림자 배심연구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제1저자.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제2저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 I. 서 론

사법 공정성에 대한 과거의 조사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사법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은 ‘법’이란 말을 떠올리면 ‘권위적이다’ 또는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법집행이나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sup>1)</sup>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법집행에 차별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sup>2)</sup> 이런 조사결과와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의 관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사법 공정성,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사법 신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sup> 재판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곧 법원에 대한 신뢰의 저하로 이어지고, 사법제도의 정당성 위기로 전화할 우려가 있다.

형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사법제도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sup>4)</sup> 지금까지 사법 불신의 원인에 대한 탐색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형사사법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sup>5)</sup> 형사재판에서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형법의 해석과 적용, 양형의 공정성 등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와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사법 불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sup>6)</sup> 공정한 형사재판을 위해서는 유무죄와 양형을 수사기록이나 조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sup>7)</sup> 이런 지적에 따라 시민이 사법

1) 이세정·이상윤,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8), p. 102; 동아시아연구원, EAI 여론브리핑, 제43호, 2009. p. 4.

2) 신의기·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pp. 117-118.

3) 이상원,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 pp. 308-309.

4) Daniel W. Shuman & Jean A. Hamilton, “Jury Service - It May Change Your Mind: Perceptions of Fairness of Jurors and Nonjuror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Review*, Vol. 46 (1992), p. 451.

5) 하태훈,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제134호(2013), p. 584.

6) 한인섭, “법조비리-문제와 대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제1호(1998), pp. 164-188.

7) 민영성, “공관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 **법조**, 제593호(2006), pp. 94-126; 신동운, “공관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1호(2003).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직업법관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사법 결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고취하고 신뢰를 얻게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sup>8)</sup>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9)</sup> 공정한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와 논의가 가능하지만, 공평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다.<sup>10)</sup>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다. 공판중심주의, 구술심리강화 등 그동안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논의되었던 방안들과 함께 시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다.<sup>11)</sup> 그러나 과연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의 재판의 공정성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가? 우리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질문에 답하려 한다.

과거에 일반 국민의 사법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와 사건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sup>12)</sup> 그러나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법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직접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다. 배심 참여자는 일반 시민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인식을 형성하게 되므로 재판 공정성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비해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재판 참여 경험과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8) 안경환 ·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집문당, 2005); 장중식, “우리나라 국민참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법학연구**, 제39권(2009), pp. 402-404.; 하태훈, *supra* note 5, p. 587.

9) 헌법재판소 1996. 1. 25. 95헌가5.

10) 공정한 재판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고 헌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을 의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도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 헌법재판소 2001. 8. 30. 99헌마496.

1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12) 신의기 · 강은영, *supra* note 2.

의미가 있다. 평결에 참여하는 배심원 스스로 느끼는 공정성이 곧 재판의 공정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sup>13)</sup> 배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성 인식 연구는 시민들의 사법 공정성 인식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법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시민의 개인적 특성이나 기존 경험을 살펴본 후, 일반적인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는 정부기관에 대한 기존의 경험이나 인종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sup>14)</sup> 또한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경우 특히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배심원 참여의 경험이 왜 어떤 이유에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고, 특히 공판 중 일어나는 여러 경험이나 평가가 아니라 평의 과정 중에 어떠한 경험이 사법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고찰한 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공판 과정과 관련된 요인과 평의 과정과 관련된 요인들이 어떻게 재판 공정성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전국에서 열린 20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진행된 그림자 배심에 참여한 배심원단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국민참여재판 참여자들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공판 참여 경험과 평의 참여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탐구하겠다. 제II장에서는 사법 공정성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III장에서는 연구의 모형과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IV장에서는 재판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재판에 대한 참여와 평의 참여와 관련된 어떠한 요인들이 연관성을 갖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제시하고 재판 공정성 인식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sup>13)</sup> Shuman & Hamilton, *supra* note 4, p. 451.

<sup>14)</sup> Tom R. Tylor, Jonathan D. Casper & Bonnie Fisher, "Maintaining Allegiance toward Political Authorities: The Role of Prior Attitudes and the Use of Fair Procedur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3 (1989), pp. 634-643; Bernadyne Turpen & Anthony Champane, "Perceptions of Judicial Fairness", in James A. Inciardi & Kenneth C. Haas (eds.), *Crime and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Kendall/Hunt Pub., 1978), p. 267.

<sup>15)</sup> Shuman & Hamilton, *supra* note 4, pp. 463-468.

## II.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 1. 사법 공정성에 대한 인식

국내에서 사법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한 법의식 및 법태도에 관한 조사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초기 연구라 할 수 있는 임희섭의 연구는 1970년대 전국표본, 대학생표본, 법률직 종사자표본의 3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법태도에 관한 인식조사에 근거한다.<sup>16)</sup> 그는 법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태도를 구분한 뒤에, 정당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동일시감(identification), 즉 행위자가 법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가까운 것으로 느끼는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정서적 측면에서 법적 소외감이 상당히 높고 법의 타당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up>17)</sup>

이후 사법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주기적으로 수행되었다. 예컨대, 한국 법제연구원의 ‘2008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갖게 되는 느낌이 권위적이다(43.6%), 불공평하다(32.6%), 민주적이다(14.2%), 공평하다(8.9%)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의 4배 가까이 될 뿐 아니라, 1991년과 1994년에 같은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법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1991년 13.4%, 1994년 13.0%에서 2008년에는 8.9%로 현격하게 줄어든 반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1991년의 24.7%, 1994년의 24.9%에 비해 더 늘어났다.<sup>19)</sup> 또한 우리 사회의 준법 행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의 52.8%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제시했다.<sup>20)</sup>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라는 응답이 20.1%,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14.5%였다.<sup>21)</sup> 시민들은 법이 권위적이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법을 별로 잘 지키지

16)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15권 제1호(1973).

17) 상계서, p. 48.

18) 이세정 · 이상윤, *supra* note 1, p. 102. 이 연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07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한 결과이다.

19) 상계서, p. 105.

20) 상계서, p. 193.

21) 상계서, p. 196.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고 있기도 하다.

2003년에는 KBS에서 ‘사법제도 개혁 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재판이 공정한가’에 대해 68.6%가 아니라고 응답하였고,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1.7%뿐이었다.<sup>22)</sup> 또한 재판의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재판이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동아시아 연구원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법집행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해 공정하다는 응답이 38.3%,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0.6%로 나타나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sup>23)</sup> 2011년 법률소비자연맹 조사도 마찬가지이다.<sup>24)</sup>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6.6%에 달했으며, 그 이유로 ‘법보다는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나 되었다.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2.6%,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응답이 9.0%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서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가 있다. 법집행기관인 세무서, 경찰서, 검찰, 법원 등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법원의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6%가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나 검찰의 업무 처리에 비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그러나 형사재판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의 63.0%는 ‘형사재판 절차’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37.0%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9.6%,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4%였다.<sup>26)</sup>

같은 연구에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55.2%만이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76.3%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9.2%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22) 전국 7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이다.

23) 동아시아연구원, *supra* note 1, p. 4. 전국 8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24) 법률소비자연맹,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2011.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5) 신의기·강은영. *supra* note 2. p. 133.

26) 상계서, pp. 175-76.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응답했다.<sup>27)</sup> 또한 응답자들은 사회지도층의 법질서 위반행위 중 '탈세', '뇌물수수', '기업자금 횡령/배임'을 가장 핵심적인 비리로 생각하면서 처벌공정성이 낮은 분야로서 엄중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의견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수준, 경제적 수준, 정치적 성향 등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sup>28)</sup>

결국 기존 조사 결과는 국민이 한국사회에서 법질서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압축적 경제성장이 실현되는 동안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지속되면서 지배엘리트들의 탈법적 행동이 시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면서 나타난 '이중적 법질서(legal dualism)'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sup>29)</sup> 이중적 법질서란 명목으로서 법 가치와 실질로서 법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들이 누구든지 법의 이름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소추상태가 도사리고 있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을 지키는 방법보다는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과 규칙을 차별 적용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정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기도 하는 등, 이중적이고 상호모순적인 법의식과 기준들을 적용한다. 이중적 법질서가 만연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성원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 사법제도의 정당성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입법부와 행정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sup>30)</sup> 2012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대법원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sup>31)</sup> 학자들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 강화 등 법정중심의 재판으로의 변화를 주장해왔다.<sup>32)</sup>

시민의 형사재판 참여는 역시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할 수 있다.<sup>33)</sup>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후 시민의 재판 또는

27) 상계서, pp. 117-118.

28) 상계서, pp. 90, 98, 122-123.

29) 박승관 · 장경섭, “한국인의 이중적 법질서와 언론 권력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35집 제2호(2001), pp. 91-114, 100-103.

30) 하태훈, *supra* note 5, p. 578.

3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012. 5. 22.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32) 하태훈, *supra* note 5, pp. 584-585; 민영성, *supra* note 7.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12년의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결과 재판의 공정성, 양형의 타당성, 피고인의 권리보장, 비민주적 수사 절차, 재판의 신속성, 사법권력 남용의 다섯 가지 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질문했는데, 전체적으로 나빠졌다는 의견은 소수였으며,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20%, 좋아졌다는 의견이 30%대로 나타났다.<sup>34)</sup> 또한 국민참여재판 실시 결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양형의 타당성,’ ‘비민주적 수사절차’의 개선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인식했다.<sup>35)</sup>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응답자들 중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39.5%에 달하였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sup>36)</sup> 그러므로 국민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재판의 공정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고 하겠다.

한편 미국의 사법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는 다각적으로 수행되었다. 터펜과 샴페인(Turpen & Champagne)은 미국 내 10개 도시의 시민들에게 법원이 공정한지를 질문했는데 3분의 2의 응답자가 법원이 항상 또는 대부분 공정하다고 응답했다.<sup>37)</sup> 우리나라의 법원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보다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더 높았지만, 터펜과 샴페인의 조사에서는 법원이 시민을 ‘적절하거나 정당하게(proper or just)’ 취급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측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 결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응답자의 3분의 1은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하겠다.<sup>38)</sup> 한편 크론과 스트래튼(Krohn & Stratton)의 조사에서는 심지어 주 교도소 수감자들도 형사법원 체제를 공정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감자 응답자의 70%가 그들이 위반한 법이 공정한 법이었다고 응답하였고, 64%가 경찰에 의해 그들이 공

33) 하태훈, *supra* note 5, p. 587.

34) 신의기·강은영, *supra* note 2, pp. 180-81.

35) 상계서.

36) 상계서, p. 179.

37) Turpen & Champagne, *supra* note 14, p. 264. 이 때 ‘공정함’이란 결과의 공정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적절하거나 정당한(proper or just) 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했다.

38) *Ibid.*, pp. 262-263.



정하게 취급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62%가 검사로부터 공정한 취급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74%가 판사로부터 공정한 취급을 받았다고 응답했다.<sup>39)</sup>

이러한 결과는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들이 미국의 사법제도가 정의로운 것이기를 바라는 심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sup>40)</sup>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법원과 판사가 공정하다고 믿고자 하는 강한 심리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sup>41)</sup> 그러나 미국 시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오우버비와 동료들(Overby et al.)은 미시시피 주의 성인 6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판사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백인과 흑인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sup>42)</sup> 흑인보다는 백인 응답자가 사법제도와 판사의 공정성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맥쿤과 타이러(MacCoun & Tyler)의 연구에서는 사법제도 일반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보다 배심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43)</sup> 90%의 응답자가 배심재판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겠다.

## 2.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의 개인적 특성과 연관된 것이라는 연구들이 있다. 먼저 타이러와 동료들(Tyler et al.)은 재판에 참여하는 피고인의 인식

<sup>39)</sup> Marvin Krohn & John Stratton, “A Sense of Injustice? Attitudes Towar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nstitutional Adaptations”, *Criminology*, Vol. 17 (1980), p. 498.

<sup>40)</sup> Tobin A. Sparling, “Through Different Lenses: Using Psychology to Assess Popular Criticism of the Judiciary from the Public’s Perspective”, *Kansas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 19 (2010), pp. 482-488.

<sup>41)</sup> *Ibid.*, pp. 481-482.

<sup>42)</sup> L. Marvin Overby, Robert D. Brown, John M. Bruce, Charles E. Smith, Jr. and John W. Winckle III, “Justice in Black and White: Race, Perceptions of Fairness, and Diffuse Support for the Judicial System in a Southern State”,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 25 (2004), p. 172.

<sup>43)</sup> Robert J. MacCoun & Tom R. Tyler, “The Basis of Citizens’ Perceptions of the Criminal Jury”, *Law and Human Behavior*, Vol. 12 (1988), p. 337.

을 연구하였는데, 당장의 재판 결과가 본인에게 얼마나 유리한가에 따라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보다는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시각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sup>44)</sup> 공공기관에 대한 기존의 경험에 의해 법원을 포함한 정부기관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고, 이러한 원래의 시각이 사법제도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up>45)</sup> 그들은 사법제도에 대한 태도는 한 사람의 생애에 걸쳐 발달된 일반적인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터펜과 샴페인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법원의 공정성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이거나 나이가 젊을수록 법원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발견했다.<sup>46)</sup> 캐스퍼와 동료들(Casper et al.)도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경우 백인보다 흑인 피의자가 법원에 대해 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점을 발견했다.<sup>47)</sup>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8)</sup>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는데, 고졸 이하 응답자들은 전문대졸 이상의 응답자들에 비해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성별, 연령, 경제수준, 정치적 성향, 사건처리 경험에 따라서는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오우버비와 동료들은 미시시피 주의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는데, 인종, 성별, 주정부기관들에 대한 평가, 인종에 상관없이 정의가 달성되리라는 믿음 여부 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9)</sup> 또한 판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위의 변수들과 함께 본인이 사법제도를 경험해 보았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다. 즉, 백인보다 흑인들이 사법제도와 판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였고, 주정부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높고 인종에 상관없이 정의가 달성된다는 믿음이 높을수록 사법제도와 판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배심원으로 활동하였거나 소송에 관여하였거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사법제도를 직접 경험한 경우가 있을수록 판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했다.<sup>50)</sup> 이렇게 사법

44) Tyler et. al., *supra* note 14, pp. 634-643.

45) *Ibid.*

46) Turpen & Chanpagne, *supra* note 14, p. 267.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는 법원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p. 267.

47) Jonathan D. Casper, Tom Tyler and Bonnie Fisher, "Procedural Justice in Felony Cases", *Law and Society Review*, Vol. 22 (1988), p. 241.

48) 신의기·강은영, *supra* note 2, pp. 211-212.

49) Overby et al., *supra* note 42, pp. 171-172.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특성이나 믿음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판사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사법제도의 경험 여부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특정 법원이나 판사에 대한 인식은 법원의 절차에 대한 경험과 연관이 더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사법제도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티보와 워커(Thibaut & Walker)는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사법제도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은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도출되었는지로부터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sup>51)</sup> 맥쿤과 타일러의 연구에서도 배심재판의 절차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배심제도를 지지한다는 점이 나타났다.<sup>52)</sup>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사법제도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을 연구한 린드와 동료들(Lind et al.)은 이들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재판 과정에 대해 본인들이 통제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절차의 품위, 변호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절차에 대한 편안함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였다.<sup>53)</sup> 반면 재판의 결과나 비용, 재판에 걸린 시간 등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4)</sup> 또한 소송인의 성별, 인종, 소득, 결혼여부, 직업 등 개인적 특성 역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나 재판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sup>55)</sup>

형사재판의 피의자들을 연구한 캐스퍼 등의 연구에서도 인종, 전과 여부, 기소된 죄목의 종류 등 개인적 요인들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지 않았다. 이들이 변호사와 대화한 시간의 길이와 경찰로부터 받은 취급이 절차

<sup>50)</sup> *Ibid.*

<sup>51)</sup> John Thibaut & Lawrence Walker, *Procedural Justice: A Psychological Analysis* (John Wiley & Sons, 1975).

<sup>52)</sup> MacCoun & Tyler, *supra* note 43, pp. 344-347.

<sup>53)</sup> E. Allan Lind, Robert J. MacCoun, Patricia A. Ebener, William L. F. Felstiner, Deborah R. Hensler, Judith Resnik and Tom R. Tyler, "In the Eye of the Beholder: Tort Litigants' Evaluations of Their Experiences in the Civil Justice System", *Law and Society Review*, Vol. 24 (1990), pp. 972-973.

<sup>54)</sup> *Ibid.*, pp. 968-969.

<sup>55)</sup> *Ibid.*, p. 976.

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sup>56)</sup> 한편 청소년으로부터 강도를 당한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판 절차에 그들이 참여하여 판사나 정부 공무원에게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재판의 진행과정을 통보받을 때, 그리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피고인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 형사법 절차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7)</sup> 즉,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특성이나 개인들이 속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듯하다.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법원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슈만과 해밀턴(Shuman & Hamilton)은 텍사스 주 델러스 카운티의 배심원 참여자 193명과 배심절차에 의해 소환되었으나 참여하지는 않았던 257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배심 참여의 경험이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sup>58)</sup> 연구결과 배심원으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형사법원의 공정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고, 덧붙여 인종, 정치단체 소속 여부, 종교, 결혼 여부 등도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9)</sup> 이 연구결과는 배심원 참여 경험이 법원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과연 어떤 이유로 공정성 인식이 향상되는지 그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절차적 공정성 연구의 결과들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피의자나 피해자, 소송인 등의 입장과 배심원의 입장에서 평가한 공정성 인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나 경찰, 검사, 판사 등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가 공정성 인식에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배심원의 입장에서는 재판과정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이 어떻게 재판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판 중 여러 사실관계 및 증거 등에 대한 논의를 잘 듣고 파악

<sup>56)</sup> Casper et. al., *supra* note 47, pp. 496-497.

<sup>57)</sup> Mari Umbreit, "Crime Victims Seeking Fairness, Not Revenge: Toward Restorative Justice", *Federal Probation*, Vol. 53 (1989), p. 55.

<sup>58)</sup> Shuman & Hamilton, *supra* note 4, p. 460. 이 두 그룹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없었고, 연구대상자들이 전체 배심원 풀을 대표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연령과 직업의 차이는 없으나 인종, 교육, 소득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461.

<sup>59)</sup> *Ibid.*, pp. 463-468.

하여 평결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가진 배심원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사건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이 재판의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배심 참여는 공판 참여와 평의 참여를 경유한 최종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에서는 공판 과정에 대한 참여뿐 아니라 평의를 통한 토의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평의 과정의 어떤 요인이 재판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평의 과정 자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데 기인하는 듯하다. 배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평의 중 일어나는 일은 비밀이므로 평의 과정에 대한 관찰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의 입장에서는 평의 중 토론의 질은 어떠하였는지,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평의의 절차와 결과에 만족하였는지, 또한 최후 결정에 본인이 동의하는지 등의 요인이 재판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직접 관찰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평의의 질은 평의 중 배심원들이 얼마나 활발히 개방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경청하였는지, 사회자가 배심원들에게 균등한 발언 기회를 주고 원만한 진행을 돕는 등 역할을 하였는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60)</sup>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 탐색을 통해 평의 과정에 대한 참여가 재판의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공판 과정에서의 판사의 역할을 언급한 바 있는데,<sup>61)</sup>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서는 평의 중에도 판사의 의견 청취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sup>62)</sup> 따라서 평의 중 판사의 개입에 대한 평가가 재판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배심원으로서의 참여는 또한 배심제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0) 이재협 · 우지숙 · 이준웅,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그림자 배심 평의 분석”, *저스티스*, 제139호(2013); Dennis J. Devine, Laura D. Clayton, Benjamin B. Dunford, Rasmey Seying and Jeniffer Pryce, “Jury Decision Making: 45 Years of Empirical Research on Deliberating Group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Vol. 7 (2001).

61) Umbreit, *supra* note 57.

6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제3항.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배심 참여가 커뮤니티에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sup>63)</sup> 펍스트와 동료들(Pabst et al.)이 미국 18개 주의 배심원들 약 3,000명에게 출구 조사(exit questionnaire)를 한 결과 이들 중 90%가 배심 참여 전보다 후에 배심 의무에 대해 호의적으로 감명 받거나 배심 의무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sup>64)</sup> 또한 배심재판에 참여하면 배심재판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로즈와 동료들(Rose et al.)이 미국 텍사스 주의 성인 1,46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배심결정에 참여해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판사재판보다는 배심재판을 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sup>65)</sup> 특히 이런 효과는 백인보다는 흑인과 히스패닉 중에 더 크게 나타났다.<sup>66)</sup> 즉,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배심 참여자들이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판사재판보다는 배심재판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배심원으로서 참여한 경험은 배심재판에 대한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거나, 배심재판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여 경험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배심원으로서의 참여 중 공판 관련 요인과 평의 관련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얼마나 해당 재판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공판과정에서 얻게 된 사건과 공판 참여자들에 대한 인식(이하 ‘공판 요인’)과 평의 과정에서 얻게 된 평의 진행 요인에

63) Richard M. Durand, William O. Bearden, and A. William Gustafson, “Previous Jury Service as a Moderating Influence on Jurors’ Beliefs and Attitudes”, *Psychological Reports*, Vol. 42 (1978), pp. 569-70.

64) William R. Pabst, Jr., G. Thomas Munsterman and Chester H. Mount, “The Myth of the Unwilling Juror”, *Judicature*, Vol. 60 (1976), p. 165.

65) Mary R. Rose, Christopher Ellison, and Shari Seidman Diamond, “Juries and Judges and the Public’s Mind”, *Judicature*, Vol. 934 (2010), p. 196.

66) *Ibid.*, pp. 196-197.

대한 인식(이하 ‘평의 요인’)이 그들의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재판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려 한다. 공판 요인은 구체적으로 (1) 배심원이 느끼는 사건의 복잡성 인식, (2) 판사에 대한 평가, (3) 변호사에 대한 평가, (4) 검사에 대한 평가, (5) 피고인 의견피력의 충분함 등을 포함한다. 평의 요인은 (1) 평의 중 배심원간 의견교환 정도, (2) 본인의 평의 참여도, (3) 사회자의 진행의 원만함, (4) 판사의 평의 중 도움, (5) 본인 최종 결정의 어려움 등을 지칭한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속한 변수들에 덧붙여 (6) 평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7)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해서 이런 변수들이 해당 재판에 대한 공정성 평가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겠다.

우리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이 제시하듯이, 공판 요인과 평의 요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변수들, 즉 해당 재판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참여재판 일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요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개인차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즉 배심원 개인의 성,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나 개인의 인지욕구 또는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 등의 수준에 따라 해당 재판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참여재판 일반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판 요인과 평의 요인이 종속변수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 통제 변수  | 독립변수군 1  | 독립변수군 2  | 종속 변수   |
|--|--|--|---|
| 인구사회적 배경 및 개인차   | 공판 요인  | 평의 요인  | 국민참여재판 평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li> <li>- 연령</li> <li>- 교육</li> <li>- 일반 신뢰</li> <li>- 인지 욕구</li> <li>- 배심 종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복잡성 인식</li> <li>- 판사에 대한 평가</li> <li>- 변호사 유능함 평가</li> <li>- 검사 유능함 평가</li> <li>- 피고인 발언의 충분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심원 의견 교환</li> <li>- 본인의 평의 참여도</li> <li>- 사회자 진행</li> <li>- 판사의 평의 중 도움</li> <li>- 최종 결정 어려움</li> <li>- 평의 만족도</li> <li>- 판결 동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재판에 대한 공정성 인식</li> <li>- 참여재판에 대한 평가</li> </ul> |

## 2. 연구방법

### 1) 표본의 특성

연구 참여자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울산, 광주, 전주, 춘천 등 전국에서 열린 20건의 국민참여재판에 소환된 배심원 후보자에서 충원되었다.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쳐 국민참여재판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배심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심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그림자 배심(shadow jury)’을 구성했다. 그림자 배심은 실제 배심과 같이 공판에도 참여하고 배심도 진행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배심과 같은 경험을 했다. 배심원 출석통지를 받고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 불선정된 시민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이하 ‘시민배심 집단’) 이외에도 법원의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그림자 배심에 참여한 자들(이하 ‘참여배심 집단’)도 있었다. 후자인 참여배심 집단은 법원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들로서 배심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을 법원의 출석요구에 의해 구성된 시민배심 집단과 구분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자 배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판 직후에 1차 설문조사를 하고, 평의 직후에 2차 설문조사를 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들은 뒤 최종 3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 구 분           |        | 전체  | 시민배심       | 참여배심       |
|---------------|--------|-----|------------|------------|
| 성별<br>(n=281) | 남      | 125 | 55 (44.0)  | 70 (56.0)  |
|               | 여      | 156 | 66 (42.3)  | 90 (57.7)  |
| 연령<br>(n=283) | 20대    | 158 | 30 (19.0)  | 128 (81.0) |
|               | 30대    | 48  | 25 (52.1)  | 23 (47.9)  |
|               | 40대    | 24  | 20 (83.3)  | 4 (16.7)   |
|               | 50대    | 36  | 35 (97.2)  | 1 (2.8)    |
|               | 60대 이상 | 17  | 13 (76.5)  | 4 (23.5)   |
| 학력<br>(n=278) | 중졸 이하  | 15  | 15 (100.0) | 0 (0.0)    |
|               | 고졸     | 111 | 43 (38.7)  | 68 (61.3)  |
|               | 대졸 이상  | 152 | 63 (41.4)  | 89 (58.6)  |

\* 일부 변수에 대한 무응답으로 총계가 상이함



응답자는 모두 29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배심원 중 남성이 42.7%, 여성이 53.2%로 여성이 약간 많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16.4%, 50대 12.3%, 40대 8.2%, 60대 이상 5.8% 등 순서였다. 배심원의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51.9%를 차지해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학력이었다. 배심원 중 고졸은 37.9%이었고, 중졸 이하는 5.1%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시민배심원은 126명, 참여배심원은 169명 총 295명이다. 참여배심원은 일반 시민배심원에 비해 연령이 낮고( $X^2=105.374$ ,  $df=4$ ,  $p=.000$ ) 학력은 높았다( $X^2=20.764$ ,  $df=2$ ,  $p=.000$ ). 20대 배심원들 가운데 81.0%가 참여배심 집단에 속했으며, 19.0%만 시민배심에 속했다. 학력을 보면, 참여배심 집단에는 중졸 이하 학력의 배심원은 한 명도 없었다. 대졸 이상의 배심원들을 기준으로 보면 참여배심에 58.6%가 속했고, 시민배심에는 41.4%가 속했다.

## 2) 변수의 측정

### (1) 공판 요인

공판 요인 중, 사건의 복잡성 인식은 모두 네 문항으로 측정했다. 이는 공판 후 측정된 (1) 법적 쟁점의 복잡성과 (2) 사실관계의 복잡성 등 두 문항과 판결 후 측정된 (3) 법적 쟁점의 복잡성과 (4) 사실관계의 복잡성 등 두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한 ‘매우 복잡하다’, ‘조금 복잡하다’, ‘조금 평이하다’, ‘매우 평이하다’ 등 4개의 선택지를 이용한 동의 여부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여 평균값을 구했다. 복잡성 인식의 분포는 따라서 1점에서 4점이었으며, 평균값은 2.21 ( $S.D=.71$ )이었으며, 네 문항의 내적 일치도에 따른 신뢰도 값은 .84였다.

판사에 대한 평가는 모두 다섯 문항으로 측정했다. 판사의 발언 명확성, 배심원에 대한 설명의 명확성, 배심원에 대한 존중, 공정한 재판 진행, 유능하고 원만한 재판 진행 등에 대한 문항이었다. 다섯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리커트 형식으로 질문해서 얻은 값을 평균해서 변수를 구성했다. 측정된 판사평가의 분포 역시 1점에서 3점으로 분포하며 평균값은 3.67 ( $S.D=.38$ )이었다. 네 문항의 내적 일치도에 따른 신뢰도는 .71이었다.

변호사에 대한 평가와 검사에 대한 평가는 각 증거제시의 타당성, 무죄 및 유죄 입증의 유능함, 발언의 적절성 등 세 문항으로 측정했다. 평균값은 각각 2.89 ( $S.D=.62$ )와 3.11 ( $S.D=.58$ )이었으며, 각 세 문항의 내적 일치도 신뢰도는 .61과 .60이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충분히 발언했는지 여부도 공판에 대한 인식에 포함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아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이 변수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했으며,

평균값은 3.02 (S.D=.89)를 기록했다.

## (2) 평의 요인

평의 요인으로 설정한 변수는 배심 사회자 진행, 배심원 참여도, 본인 참여도, 판사의 평의 중 도움, 최후결정 어려움, 평의 만족도 등 6개였다. 그리고 평의가 끝난 후 판사의 판결에 대한 동의 여부도 질문해서 변수화했다. 우선 사회자 진행은 배심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편파적으로 평의진행을 했는지(역으로 코딩함), 원만하게 진행했는지 등 3문항을 이용해서 질문했다. 세 문항의 평균값은 3.52 (S.D=.55)였으며, 내적 일치도 신뢰도는 .55였다.

배심원 참여도는 배심원들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개방적이었는지, 다른 배심원 의견을 경청했는지,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는지 등 세 문항을 사용해서 측정했다.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은 3.59 (S.D=.49)였으며, 내적일치도 신뢰도는 .73을 기록했다. 본인의 참여도는 네 문항으로 측정했다. 평의 중에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했는지,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했는지, 평의에 열심히 참여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했는지 등이었다. 네 문항의 평균값은 3.54 (S.D=.55)였으며, 내적일치도로 측정한 신뢰도는 .74였다.

판사의 평의 중 도움여부는 ‘판사는 원만하게 평의에 도움을 주었습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이용해서 측정했고, 최후 결정의 어려움 역시 ‘피고인과 그 가족이 겪게 될 고통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이용해서 측정했다. 두 변수의 응답자 평균값은 각각 3.38 (S.D=.77)과 2.32 (S.D=.93)였다. 평의에 대한 만족도도 ‘배심원 평의에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이용해서 측정했으며, 응답자 평균은 3.30 (S.D=.65)이었다. 마지막으로 판사의 최종 판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법원의 유무죄 판결에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해서 측정했다. 이 문항의 응답자 평균은 3.52 (S.D=.70)였다.

## (3) 종속 변수 및 통제 변수

이 연구의 종속 변수가 되는 배심원 참여 재판에 대한 공정성 평가와 참여재판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문항은 ‘전체적으로 본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두 문항의 평균값은 각각 3.43 (S.D=.65)과 3.48 (S.D=.58)이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 이외에 개인차 통제 변수로 인지육구와 일반신뢰를 측정했다. 인지육구는 개인의 사태나 사안에 대해 숙고하고 탐구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이런 성향이 높을수록 공판 및 평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토론을 즐긴다, (2) 생소한 문제의 해결을 즐긴다, (3) 논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4) 잘 모르는 일은 더 알고 싶다 네 문항을 사용했으며 평균값은 3.12 (S.D=.42)였다. 네 문항의 내적 일치도에 따른 신뢰도는 .73이었다.

일반신뢰는 불특정한 타인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의미하며,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변수는 (1) 우리나라 사람들을 믿고 거래할 만하다, (2) 우리나라는 법과 원칙이 통한다, (3)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는 만큼 보답한다 세 문항으로 측정했다. 평균값은 2.64 (S.D=.52)였으며, 세 문항의 내적 일치도 신뢰도는 .68이었다.

<표 2>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 변수       | 응답수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문항수 | 신뢰도 <sup>1)</sup> |
|----------|-----|------|------|------|------|-----|-------------------|
| 남성       | 281 | .00  | 1.00 | .44  | .50  | 1   | -                 |
| 연령       | 283 | 2.00 | 6.00 | 2.96 | 1.30 | 1   | -                 |
| 교육       | 278 | 1.00 | 3.00 | 2.49 | .60  | 1   | -                 |
| 인지육구     | 284 | 1.50 | 4.00 | 3.12 | .52  | 4   | .73               |
| 일반신뢰     | 283 | 1.00 | 4.00 | 2.64 | .52  | 3   | .68               |
| 시민배심     | 294 | .00  | 1.00 | .43  | .50  | 1   | -                 |
| 사건복잡성    | 293 | 1.00 | 4.00 | 2.21 | .71  | 4   | .84               |
| 판사평가     | 292 | 2.40 | 4.00 | 3.67 | .38  | 5   | .71               |
| 검사평가     | 292 | 1.33 | 4.00 | 3.11 | .58  | 3   | .60               |
| 변호사평가    | 292 | 1.00 | 4.00 | 2.89 | .62  | 3   | .61               |
| 피고인진술    | 246 | 1.00 | 4.00 | 3.02 | .89  | 1   | -                 |
| 사회자진행    | 287 | 1.67 | 4.00 | 3.52 | .55  | 3   | .55               |
| 배심원참여    | 283 | 1.00 | 4.00 | 3.59 | .49  | 3   | .73               |
| 본인참여     | 287 | 1.00 | 4.00 | 3.54 | .55  | 4   | .74               |
| 평의중 판사도움 | 270 | 1.00 | 4.00 | 3.38 | .77  | 1   | -                 |
| 최후결정어려움  | 280 | 1.00 | 4.00 | 2.32 | .93  | 1   | -                 |
| 평의만족도    | 282 | 1.00 | 4.00 | 3.30 | .65  | 1   | -                 |
| 판결동의     | 284 | 1.00 | 4.00 | 3.52 | .70  | 1   | -                 |
| 재판 공정성   | 281 | 1.00 | 4.00 | 3.43 | .65  | 1   | -                 |
| 참여재판 평가  | 275 | 1.00 | 4.00 | 3.48 | .58  | 1   | -                 |

1)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로 측정된 문항 간 내적 일치도

#### IV. 연구결과

<표 3>은 해당 재판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참여재판 일반에 대한 평가를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표에서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한다. 두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통제변수와 더불어 공판 요인을 독립변수로 삼아 수행한 분석을 <모형 1>, 여기에 덧붙여 평의요인을 독립변수로 추가해서 종속변수를 설명하려는 분석을 <모형 2>로 제시했다.

공판 요인을 독립변수로 삼아 재판의 공정성 인식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 1>에서는 판사의 재판진행에 대한 평가와 검사의 유능함에 대한 평가가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독립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판사가 재판진행을 잘했다고 생각할수록, 검사가 유능했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사건 재판이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평의 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재판 관련 변수 중에서는 판사에 대한 평가만 유의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검사에 대한 평가의 영향력은 사라졌으며, 평의 관련 변수 중 판사의 도움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평의 요인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평의 중 판사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할수록 사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참여자들이 형성하는 재판 공정성 인식에 판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여재판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도 수행했다. 공판 요인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인 인지욕구만 유의한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 요인, 즉 재판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토론을 즐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등 인지적 욕구가 강한 재판 참여자들일수록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참여재판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모형 2>에서는 계속해서 재판 관련 변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의 요인 중에서 평의에 대한 본인 참여 변수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 요인 중에서 시민배심이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인지적 욕구가 큰 참여자일수록, 시민배심에 속한 참여자일수록, 그리고 평의 중에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하면서 평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했을수록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참여재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재판의 공정성 인식과 참여재판 일반 평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 재판의 공정성 인식      |                 | 참여재판 일반적 평가     |                 |
|-------------|-----------------|-----------------|-----------------|-----------------|
|             | 모형 1( $\beta$ ) | 모형 2( $\beta$ ) | 모형 1( $\beta$ ) | 모형 2( $\beta$ ) |
| 남성          | .013            | .033            | -.110           | -.088           |
| 연령          | .107            | .013            | .131            | .051            |
| 교육          | -.071           | -.028           | -.027           | .000            |
| 인지육구        | .108            | .093            | .210**          | .183*           |
| 일반신뢰        | .107            | .120+           | -.048           | -.044           |
| 시민배심        | -.035           | .051            | .123            | .168*           |
| 사건복잡성       | -.011           | .025            | -.005           | .002            |
| 판사평가        | .177*           | .165*           | .049            | -.001           |
| 검사평가        | .150*           | .102            | .089            | .052            |
| 변호사평가       | .035            | -.022           | .086            | .087            |
| 피고인진술       | .001            | -.026           | .088            | .045            |
| 사회자진행       |                 | .073            |                 | .004            |
| 배심의견교환      |                 | .021            |                 | -.107           |
| 본인참여        |                 | .055            |                 | .314**          |
| 평의중 판사도움    |                 | .225**          |                 | .082            |
| 최후결정어려움     |                 | .103            |                 | .083            |
| 평의만족도       |                 | .042            |                 | .038            |
| 판결동의        |                 | .273***         |                 | .038            |
| R2          | .360***         | .557***         | .393**          | .493***         |
| $\Delta$ R2 |                 | .181***         |                 | .088**          |
| n           | 208             | 208             | 203             | 203             |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 론

이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사건이 복잡하다고 인식했다고 하여 재판이 덜 공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검사가 사건 진행에 유능하였거나 변호사가 피고인 변호를 잘했다고 하여 재판이 더 공정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충분히 진술했다고 생각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인식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기존 연구는 재판의 실제적 공정성 확보의 방안으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어야 한다는 제언을 했지만, 배심원의 입장에서만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배심원으로서 참여한 시민들은 피고인이 발언권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해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판 요인 중 유일하게 공정성 인식과 연관을 보인 것이 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한 평가였다. 즉 배심원들이 공판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고려하는 요인이 판사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했는지 여부였다. 과거 연구에서는 주로 사건 당사자의 경우 판사로부터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가 질차적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배심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역시 판사의 재판 진행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의 요인에 속하는 다른 변수들은 재판의 공정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평의의 과정 중 토론이 얼마나 개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는지, 사회자가 배심원들의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가 공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본인이 토론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인식했다고 해서 재판이 공정했다고 인식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의의 과정과 결과에 만족하였는지 여부, 판결의 방향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조차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의 관련 요인 중 유일하게 재판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변수가 평의 중 판사가 개입하여 원만한 평의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였다. 이는 그림자 배심원들이 재판의 공정성 판단에서는 평의에 대한 스스로의 참여보다도 판사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재판 관련 요인과 평의 관련 요인 중 재판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변수가 모두 판사의 역할과 관련한 요인이었다는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혹시 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의존해서 재판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갖는 것은 아닌지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참여재판 일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재판 관련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인지적 욕구가 크고 시민배심에 속한 참여자일수록, 본인이 평의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할수록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참여재판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 결과는 일단 해당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로서 참여재판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피고인이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는지,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얼마나 유능하게 재판을 진행했는지 등 재판과 관련한 요인 중 어떤 것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본인이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생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즐기며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 등의 인지욕구와 관련된 개인차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평의 관련 변수 중에서도 판사의 도움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회자가 토론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였거나 배심원 간에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덧붙여 평의에 만족했다고 하여, 평결에 동의했다고 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도 않았다. 평의 변수 중 유일하게 관계를 보인 변수는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평의 토론에 참여하였는가 하는 개인 참여 정도였다. 열심히 평의 과정에 참여한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와 앞서 확인한 배심원 개인의 인지적 능력이 미치는 효과를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배심원 개인의 참여적 동기가 국민참여재판 경험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것에 대해 많이 알고 하고 토론하려 하는 욕구를 충분히 갖고 있는 배심원의 경우, 특히 그가 평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가졌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는 판사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판사의 역할 관련 변수는 판사의 공정한 재판 진행, 명확한 발언, 그리고 배심원에 대한 존중과 적절한 설명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을 감안하면, 공판에서는 역시 판사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그동안 우리 법원이 법정 내 구술심리주의를 강화하고 법관의 적극적 소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67)</sup> 대조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정성 평가에는 배심원이 평의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평의의 형식과 진행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배심원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 인식

67) 법원행정처, 구술심리연구반 연구결과 자료집(법원행정처,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재판 개선을 위한 토론회: 소통하는 재판, 신뢰받는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을 진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림자 배심원들이 본인이 토론을 즐기는 특성을 갖고 있거나 토론에 열심히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더 많이 지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배심원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적지 않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배심제가 시민들의 도덕성 향상과 시민교육 기회의 부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미국의 배심제에 관해 오래전에 간파한 바와 같이, 배심제는 시민의 민주주의 제도와 기능에 대한 교육의 장일 수 있으며 시민적 참여의 효능감을 배양하는 터전일 수 있다.<sup>68)</sup> 시민의 배심제 참여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향상은 물론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효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합리적인 토론 문화의 정착이나 교육 과정에서의 토론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참여재판의 참여자인 시민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유능한 시민들의 사법과정에 대한 참여를 통해 민주적 법제도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                    |                    |
|-----------------|--------------------|--------------------|
| 투고일 2013. 11. 3 | 심사완료일 2013. 11. 22 | 게재확정일 2013. 11. 29 |
|-----------------|--------------------|--------------------|

<sup>68)</sup>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McGraw-Hill, 1981).



## 참고문헌

- 동아시아연구원, EAI 여론브리핑, 제43호(2009).
- 민영성, “공관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 **법조**, 제593호(2006).
- 박승관 · 장경섭, “한국인의 이중적 법질서와 언론 권력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35집 제2호(2001).
- 법률소비자연맹,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2011).
- 법원행정처, 구술심리연구반 연구결과 자료집(법원행정처, 2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재판 개선을 위한 토론회: 소통하는 재판, 신뢰받는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 신동운,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1호(2003).
- 신의기 · 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안경환 ·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집문당, 2005).
- 이상원,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
- 이세정 · 이상윤,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이재협 · 우지숙 · 이준용,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그림자 배심 평의 분석”, **저스티스**, 제139호(2013).
-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15권 제1호 (1973).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2012).
- 하태훈,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제134호(2013).
- 한인섭, “법조비리-문제와 대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제1호(1998).
- 한인섭 · 한상훈(편), **국민의 사법참여**(경인문화사, 2010).
- Casper, Jonathan D., Tom Tyler, & Bonnie Fisher, “Procedural Justice in Felony Cases”, *Law and Society Review*, Vol. 22 (1988).
- Devine, Dennis J., Laura D. Clayton, Benjamin B. Dunford, Rasmy Seying and Jeniffer Pryce, “Jury Decision Making: 45 Years of Empirical Research on Deliberating Group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Vol. 7 (2001).
- Durand, Richard M., William O. Bearden, and A. William Gustafson, “Previous Jury

- Service as a Moderating Influence on Jurors' Beliefs and Attitudes", *Psychological Reports*, Vol. 42 (1978).
- Gibson, James L., "Understanding of Justice: Institutional Legitimacy, Procedural Justice, and Political Tolerance", *Law and Society Review*, Vol. 23 (1989).
- Krohn, Marvin & John Stratton, "A Sense of Injustice? Attitudes Towar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nstitutional Adaptations", *Criminology*, Vol. 17 (1980).
- Lind, E. Allan, Robert J. MacCoun, Patricia A. Ebener, William L. F. Felstiner, Deborah R. Hensler, Judith Resnik, & Tom R. Tyler, "In the Eye of the Beholder: Tort Litigants' Evaluations of Their Experiences in the Civil Justice System", *Law and Society Review*, Vol. 24 (1990).
- MacCoun, Robert J. & Tom R. Tyler, "The Basis of Citizens' Perceptions of the Criminal Jury", *Law and Human Behavior*, Vol. 12 (1988).
- Overby, L. Marvin, Robert D. Brown, John M. Bruce, Charles E. Smith, Jr., and John W. Winkle III, "Justice in Black and White: Race, Perceptions of Fairness, and Diffuse Support for the Judicial System in a Southern State",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 25 (2004).
- Pabst, William R., G. Thomas Munsterman & Chester H. Mount, "The Myth of the Unwilling Juror", *Judicature*, Vol. 60 (1976).
- Rose, Mary R., Christopher Ellison, and Shari Seidman Diamond, "Juries and Judges and the Public's Mind", *Judicature*, Vol. 93 (2010).
- Shuman, Daniel W. & Jean A. Hamilton, "Jury Service — It May Change Your Mind: Perceptions of Fairness of Jurors and Nonjuror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Review*, Vol. 46 (1992).
- Sparling, Tobin A., "Through Different Lenses: Using Psychology to Assess Popular Criticism of the Judiciary from the Public's Perspective", *Kansas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 19 (2010).
- Thibaut, John & Lawrence Walker, *Procedural Justice: A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5).
- Tocqueville, Alexis de, *Democracy in America* (McGraw-Hill, 1981).
- Turpen, Bernadyn & Anthony Champagne, "Perceptions of Judicial Fairness", in James A. Inciardi & Kenneth C. Haas (eds.), *Crime and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Kendall/Hunt Pub., 1978).

Tyler, Tom R.,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Legal Authorities: What Do Majority and Minority Group Members Want from the Law and Legal Institutions?”,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Vol. 19 (2001).

Tyler, Tom R., Jonathan D. Casper, and Bonnie Fisher, “Maintaining Allegiance toward Political Authorities: The Role of Prior Attitudes and the Use of Fair Procedur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3 (1989).

Umbreit, Mari, “Crime Victims Seeking Fairness, Not Revenge: Toward Restorative Justice”, *Federal Probation*, Vol. 53 (1989).

<Abstract>

The Effects of Trial Procedure Factors and Deliberation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Fairness about the Trial  
- Based on Shadow Jurors' Experiences at Jury Trials in Korea -

Woo, Jisuk<sup>\*</sup>

Rhee, June Woong<sup>\*\*</sup>

Lee, Jae-Hyup<sup>\*\*\*</sup>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295 participants of shadow juries in 20 jury trial cases between January and June of 2012 in South Korea, we examined whether various factors in the court proceedings and deliberations affected the perception of fairness of the trials the shadow jurors participated in and the evaluation of the jury trials in general. We found that the shadow jurors' perception about the fairness of the trial were accounted for by their perceptions of how well the judges managed the trials and of how helpful the judges were in assisting the deliberation process. The shadow jurors did not think the trial was less fair because they perceived the case was complex. Nor did they think the trial was fair because the prosecutor made a good case against the defendant or because the defense counsel made a good defense. Whether the shadow jurors perceived that the defendants were given sufficient time and opportunity to speak did not influence their perception of how fair they thought the trial was. Whether the juror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whether the foreperson managed the deliberation well, whether the jurors were satisfied with the deliberation process, whether the juror agreed with the verdict did not

---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ond author.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t author.

affect the perception of the fairness, either. The role of the judges clearly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shadow jurors'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trial, suggesting that even the shadow jurors who participated in the new jury trial based their evaluation of the trial in the performance of the judges.

On the other hand, the shadow jurors' support of the jury trial in general was influenced by very different explanatory variables. None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court proceedings affected the jurors' support of the jury trial. Rather, the jurors'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ir degree of cognitive wants influenced how desirable they thought the jury trial is for the fairness of the trial. The shadow jurors who enjoyed debates and were willing to solve difficult problems and to learn new things were more likely to appreciate the jury trial as an institution to advance the fairness of the trial. Also, the more the shadow jurors thought that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process, the more desirable they thought the jury trial is for fair trial. None of the other discussion-related factors such as the role of a foreperson o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deliberation, etc. influenced the jurors' attitude toward the jury trial. In conclusion, the shadow jurors' attitude toward the desirability of the jury trial depends more on the assessment of their own cognitive abilities and wants and the willingnes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It is suggested that not only the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at jury trial strengthens the participants' ability in deliberation an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the increased abilit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will be critical in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the jury trial in the future.

Keywords: fairness, jury system, shadow jury, Korean jury trial

